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적 용 범 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목 차

CONTENTS

Ⅰ. 사업개요 ····· 1
1. 개념 정의 ····· 1
2. 마을기업 요건 ····· 2
3. 지원내용 ····· 6
Ⅱ.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 8
Ⅲ. 사업추진절차 ····· 10
Ⅳ. 세부 운영방안 ····· 11
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 11
2. 마을기업 교육 ····· 13
3. 마을기업 신청 ····· 15
4. 심사 및 지정 ····· 16
5.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 21
6.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 ····· 23
7. 자립 지원 ····· 29
8. 통계 및 실태조사 ····· 29
9. 지도 · 점검 및 관리 ····· 29
10. 사업비 집행 실적 평가 ····· 34
11.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 34

목 차

CONTENTS

Ⅴ.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 ····· 36
1.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 36
2. 예비 마을기업 ····· 37
3. 新유형 마을기업 ····· 38
4. 유통형 마을기업 ····· 40

Ⅵ.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 ····· 42
1. 지원기관 평가 ····· 42

Ⅶ.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43
1. 사업 예산 집행 기준 ····· 43
2.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 45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51

붙 임 관련서식 ····· 63

참 고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 105

Ⅰ 사업개요

1 개념 정의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 · 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함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함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

2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 · 군 · 구에서 시 · 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 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3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 마을기업에서 투자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구 분	1차년도 지정	2차년도 지정
초기투자형	5천만원	3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5천만원

– 예비마을기업은 종전과 같이 1천만원 지급

※ 유통형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자 부 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지원대상)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 (선정시기) 2018년 하반기 선정(별도계획 통보 예정)

* 예산지원은 2019년 예산 활용(2018년 예산 잔액이 남은 지자체는 2018년 지원 가능)

○ (선정방법)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심사

자립 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Ⅱ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제도운영 관련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시 · 도에서 지정 심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요건 충족여부 등 최종 심사(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마을기업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 · 전파

○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 스타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광역자치단체

○ 시 · 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전반적 관리 · 감독

○ 마을기업 공모, 시 · 군 · 구에서 추천된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 군 · 구 지원 예산 및 대상 법인(단체) 수 결정

○ 지원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지원기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행정안전부 제출

○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 및 추천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행정안전부 제출

○ 마을기업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기초자치단체

○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

○ 마을기업 신청 법인 대상 적격 검토, 시 · 도에 추천

○ 지정된 법인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 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현장점검

○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시 · 도 제출

○ 마을기업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교육 기획 및 운영

○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

○ 마을기업 지정 및 심사 지원

○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지원 계획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마을기업 교육 계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필요한 업무

○ 마을기업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등은 마을기업 관련 서류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할 것

Ⅲ 사업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지원기관 선정	·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광역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안부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초→광역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 마을기업의 2차지원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을 2018년 3월말까지 완료할 것

※ 2019년 4월중에 모든 마을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Ⅳ 세부 운영방안

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지원기관 공고(지자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선정위원회)
→ 위탁비용 결정(지자체) → 계약체결(지자체-지원기관)
→ 지원업무 수행(지원기관) → 수행실적 평가(행정안전부)

지원기관 공고 · 선정

○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고 ·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마을기업 관련 국 · 과장, 행안부 추천자, 민간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 법인, 연구원 등도 지원기관으로 참여 가능

○ 마을기업관계자(협회, 연합회, 협의회, 마을기업 대표 등 마을기업인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 · 단체)는 지원기관이 될 수 없음

○ 응찰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기관을 활용 가능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별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배정 예산액의 범위에서 계약대상자에 대한 위탁계약 금액 확정

  ※ 지역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 수, 경제활동 인구, 마을기업 수, 활성화 기반 현황 등 지원기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위탁금액 확정

- 확정된 위탁계약 금액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지원기관 간 계약 체결
- 지원기관의 역할이 1~2차 마을기업 지정심사 이외에 자립형 마을기업 관리 · 컨설팅 · 홍보 · 마케팅 등 마을기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인력 등)에 반영

○ (계약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집행

-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공간을 제공 가능
- 선금 이외에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가능

지원기관 명칭 사용

○ 지원기관은 “OO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명칭을 사용

○ 마을기업과 관련된 업무 활동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지원기관 명칭 사용

지원기관 운영 및 관리

○ 지원기관은 광역지자체에 마을기업 지원실적 제출

○ 지원기관은 마을기업 교육 등 사업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교육 대상, 시간 및 장소, 강의 주요 내용, 강사 프로필 등 구체적 계획 포함

○ 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 심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함

2 마을기업 교육

개 요

○ (목적)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및 마을기업의 발전 도모

○ (대상)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 (교육과정) 입문, 기본, 심화, 전문 교육 등

○ (교육운영) 해당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설립희망자의 교육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가급적 반기별 1회 이상 교육과정 운영

○ (이수확인) 교육을 운영한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확인

교육과정별 특징

○ 설립 전 교육은 입문, 기본,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며 지침에 따라 교육시간, 이수효력기간,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입문, 기본, 심화 과정은 지침에 따라 필수 및 선택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선택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교육 구성 및 권장 내용>

구분		필수	선택
입문	(4시간, 무료) 이수효력: 2년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
기본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2년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우수사례(견학) 공동체 운영 및 관리
심화	(10시간, 유료) 이수효력:2년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요령)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기업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 교육비는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문과정은 단순 설명회와 구분

○ 도서 산간지역 등 특별 지역에서는 입문, 기본, 심화(설립전 교육) 과정 및 지역 특화 과정을 별도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설립전 교육 과정으로 운영은 반드시 해당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 전문과정 교육비용 등 자율적 운영

- 2차 지원 및 우수마을기업 희망자 대상 교육은 제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의 관리 등) 및 환경(시장, 지역 등)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전문 교육 특징>

구분		대상	내용
전문	4시간 (비용:자율)	2차 지원 신청 희망자 우수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최신 마을기업 우수사례, 해외 우수사례 등을 지속 공유할 것

○ 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공무원도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교육 이수와 각종 신청 자격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

※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3 마을기업 신청

마을기업 공모

○ 마을기업에 대한 공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함

마을기업의 신청

○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⑧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시도에서 심사시 작성하여 행안부 제출)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2차지원, 고도화 마을기업 신청의 경우, ⑨실적보고서(서식4), ⑩정산보고서(서식5), ⑪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심사 및 지정

적용범위

○ 심사기준 및 방법은 1차년도 및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예비마을기업 지침(P38)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함

기초자치단체 적격 검토 등

○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 검토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하며, 적격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마을기업은 탈락이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적격 검토 절차

○ 사업신청을 받은 시 · 군 · 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

○ 현지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현지조사표, 적격 검토 확인서,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시 · 도에 추천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는 시 · 군 · 구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이를 '시·군·구 심의위원회' 라 칭함)

* 사회적경제 등 유사위원회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위원장은 시 · 군 · 구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서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마을기업의 적격여부 판단

○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심사

○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함.

* 추천시 광역자치단체 현지조사 및 심사 결과서 등 첨부

심사위원회

○ 시 · 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추천위원 중에서 7인 이상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분야별 전문가, 타지원기관

- 위원장은 시 · 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위원 구성시 지역전문가, 회계, 마케팅, 제도, 전문경영인 등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 참여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심사 절차 및 방법

○ 현지조사표, 마을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마을기업 사업의 적절성 및 우수성 심사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시 · 군 · 구에 통보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

○ 시 · 도에서 선정한 마을기업과 법인에 대하여 시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정

- 민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년도, 2차년도, 고도화대상 지정 심사

* 서류심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기초지자체와 약정 체결 이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심사기준

신규지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업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1 3 5 1 3 3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신유형 마을기업 등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차년도 지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고도화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총 계	100	

5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약정 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마을기업 지원 약정」체결(서식8)

○ 약정은 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 체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지정 결정 취소

- 다만, 2개월 초과한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마을기업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약정체결 가능

○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마을기업 운영 약정」등을 체결할 수 있음

약정내용의 변경

○ 마을기업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기업 계획변경 신청서(서식7)와 변경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나 법인 형태 등 변경 시**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변경 전·후 법인의 구성원 및 사업내용이 동일한 단순 명칭 변경시 시군구 심의위원회 승인, 다만 법인 합병시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 계획변경의 승인에 대해 마을기업이 통보받은 날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마을기업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이 관할을 벗어날 경우 이전한 관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체성과 사업 내용에 변경이 미미한 경우에만 이전을 허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약정해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포기 및 폐업)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
- (규정위반) 약정,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사업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인한 마을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상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1년 이상의 휴업이 의심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책사유) 기타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해지 결정을 마을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

-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는 약정해지 후 행안부에 지정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6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요건

○ (지원금액) 마을기업이 제출한 사업별 예산계획에 따른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 1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시에서는 5,000만원(후기투자형은 3,000만원)
-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시에서는 3,000만원(후기투자형은 5,000원)
- 고도화 마을기업에는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 지원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 마을기업의 계획과 달리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급방식)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일괄지급, 경우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 (제한요건)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 등(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기타 운영비’의 총액은 3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56쪽 참조)에 따라 예산편성 ·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해야 함

사업비 집행 기준

○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 2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 ·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사업비 정산 및 검토 · 확인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정산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없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단체로 하여금 사업종료(매년 12월 말)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최종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및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여야 함(서식 4, 5)

※ 실적증빙자료 예시) 고용실적(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회공헌실적(사진, 보도자료, 지출자료 등),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등

○ 점검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서식13)

○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 · 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마을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업 투명성 확대를 위해 모든 마을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이전년도의 재무제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 검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

○ 마을기업의 집행내용에 부적절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 또는 그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함

- 정산시의 자부담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 만큼 보조금에서 환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현저히 그리고 고의·과실에 의해 감소하였을 경우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

※ 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사업비 지원에 따른 마을기업의 의무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②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③ (최종)마을기업 사업 계획서, ④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포함〉, 수익금) 사본 각1부씩 총 2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⑦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

* 이행보증보험료, 마을기업협회 가입회비는 마을기업의 자체 부담으로 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

**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은 1차년도 사업비 지원 시에만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적)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지원받는 마을기업

  *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발급,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성립 이후 보증증권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피보험자) 시·군·구
- (보험가입금액)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 (보험기간) 2018년 계약일 ~ 사업종료일
- (보증내용)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제출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 · 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 · 작성

○ 제출서류

- ①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기타 증빙자료 포함 : 관련 사진, 각종 홍보물 견본, 언론 보도자료 등

- ② 마을기업 정산보고서(서식5)

  ※ e나라도움에서 확인가능한 부분은 별도 제출하지 않고 e나라도움으로 대체

  ※ 비목별로 집행내역을 합산하여 정리·제출 불가

- ③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1부 (인터넷 조회 출력물은 원본만 인정)

  ※ 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

- ④ 각종 증빙서류(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은 사본에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 단,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여야 함(확인 후 반환)

잔여액 등의 반납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 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납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금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재무제표 제출

○ 모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자립형마을기업도 포함됨

사업 변경 발생시 보고

○ 마을기업은 주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7)

* 법인형태, 법인 대표, 주 사업장, 주 사업계획 등

○ 사업을 중도포기 할 경우, 중도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타 협조 의무 등

○ 사업비 지원종료 후에는 관리카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카드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서식12)

※ 자립형 마을기업을 포함하며, '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의 설문조사,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 작성, 제출과 검사에 협조하여야 함

7 자립 지원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협회 등은 마을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DB 관리 등을 성실히 하여야 함

8 통계 및 실태조사

○ 조사대상: 모든 마을기업(매년 3월말 기준) * '18.3월 기준
○ 조사기간: 매년 4월 중순까지('18년은 4.13일까지) * 금년부터 정례화
○ 자료 작성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자: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 모든 조사항목은 작성요령에 따라 공란(누락) 없이 작성

※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정기점검(연 1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조사

9 지도 · 점검 및 관리

정기 지도 · 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 · 점검 실시

-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분기별 1회, 자립형 마을기업 중 자립 1~2년차는 반기별 1회, 3년차 이상은 연 1회
-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매 분기별, 그 외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별(자립 3년차 이상은 연 1회)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점검표 포함) 작성, 광역자치단체장에 제출(익월 10일 이내)(서식 12)

※ 자립형 마을기업의 정기점검은 '통계 및 실태조사' 기간에 추진

특별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원 종료(1차년 또는 1 · 2차년 최종지원 종료)후 5년 경과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존속여부 등 판단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단, 자립형 마을기업 정기점검시 존속여부를 확인한 경우 특별점검을 정기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음

※ '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실태점검 후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30～31쪽)에 따라 처리

○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위반사항 조치 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마을기업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환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마을기업(자립형 마을기업 포함)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 경고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환수
-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및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
  -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

❖ 세부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 변경 등	• 주의 또는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시정지시 또는 경고
	• 사업계획 허위 이행하거나 고의·과실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 관련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주의 또는 시정지시
	•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출한 경우	• 시정지시 또는 경고
	• 예산 계획 및 활용상에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약정해지 • 참여제한, 고발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마을기업의 공공성	•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 약정해지
	•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시정지시 또는 경고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약정해지
	• 기타 관련서류 미비 등	• 주의 및 시정지시

지급물품 등의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등이 불가

– 다만, 내용연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기초자치단체가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폐기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물품 등 : 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 등 부동산도 포함

○ 사업 실행계획서 상 미기재한 물품 등의 취득은 불가

–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될 경우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해당 기초자체단체에 견적서를 첨부한 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하거나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득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방치한 경우 즉시 환수

– 다만,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내용연수기간이라도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 가능.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처리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마을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음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에 따르며 조달청 고시하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 환수·반환된 물품 등은 최대한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이관이 어려울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시킬 수 있음

○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의 불용품의 양여에 따라 처리함

- 매각의 실익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가지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의 소견을 첨부하여 처리함

❖ 물품관리법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 ·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29번)에 준하여 처리함

※ 마을기업 물품 환수 등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0 사업비 집행 실적 평가

최종평가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종료(매년 12월 말) 후 다음해 2월 중 사업 성과 보고를 위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 환수조치

○ 평가결과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정산검사서와 함께 시·도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11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마을기업 지정취소권자

○ 지정취소권자는 지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 지정취소의 절차는 약정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제장이 진행하여야 함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

○ (포기 및 폐업) 마을기업 스스로 사업을 포기 한 경우

○ (약정해지)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마을기업 사업 약정이 해지 된 경우

○ (규정위반) 관련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침(마을기업 요건 불충족 등),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사업불능)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할 것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① 지정취소 요청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발생

② 즉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을 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 추진여부를 판단함

- 필요한 경우, '시·군·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③ 이후 7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취소 결정 통지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함

- 광역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함

④ 행정안전부는 지정취소 사유가 타당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마을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통지해야 함

⑤ 지정취소 결정을 해당 마을기업이 통지 받은 날 지원 약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마을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⑥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및 물품 등 관련 처리 실시

-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마을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절차(25쪽)에 따라 처리,** 이미 집행된 금액 포함 보조금 전액 및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고의로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잔액을 반납 받아 분담률에 따라 세외수입에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실시함, 물품 등은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절차(32쪽)에 따라 처리

⑦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따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

V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

1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

사업개요

○ (정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청년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청년상인을 만 39세이하로 규정

○ 지원혜택: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구 분	현 지원기준	청년참여형 지원기준
자부담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10%
지역제한	회원의 70%	회원의 50%
가점	新유형, 여성 등 3점 부여	5점 부여
쿼터제도	-	지역별 10% 우선 할당

○ (추진일정) 2018년 6월경 선정(2차년도 지정 심사시 병행 추진)

○ (선정규모) 시도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최소 1개소 이상 선정

* 예산부족으로 2018년도에 예산지원이 곤란한 시도는 2019년 예산으로 지원 (2019년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별도 계획서 송부 예정(3월초)

○ 2019년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시에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에 대해 가점, 쿼터제도 적용

2 예비 마을기업

선정배경

○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

선정 및 관리

○ (주관/시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모 시기는 4월을 전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선정기준/방법)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혜택) 1천만원 한도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우수마을기업과 연계 등), 교육 등 지원,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 (광역)공모, (기초)접수,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광역자치단체에 추천→(광역)심사 및 지정→(기초)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 정산, 모니터링

※ 약정서, 정산 서식 등 관련서식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서식 활용 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별도 서식 사용 가능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비마을기업 선정 후 그 리스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자체 선정한 예비마을기업 포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으로 가능

✱ 설립준비를 위한 지자체 자체계획 예시

▸ 육성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마을리더 육성, 공동체 만들기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여건) 만들기
- 지역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자원개발 및 계획 수립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 교육방법 : 마을주민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지원혜택

○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노력을 익년도 예산배정과 연계

3 新유형 마을기업

육성 배경

○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형 등 신유형 마을기업 필요

○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등 인력자원, 향교 · 서원 등 문화자원, 폐교, 폐가, 폐공공시설과 같은 시설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 활용 필요

○ 마을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을기업 필요

新유형 마을기업 예시

○ (인력자원 활용)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 신유형 마을기업의 판단여부는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육성 방안

○ 마을기업 사업유형의 참신성 및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중점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新유형 마을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적극 육성

○ 新유형 마을기업 창업 희망자 대상 권역별 심화 교육 및 멘토링 실시

○ 커뮤니티 벤처 방식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가능

○ 차별적 지원, 관리 방안 마련

4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 배경

○ 마을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지정 개요

○ (설립단위) 광역 시 · 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

※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근 시 · 도와 협조하여 권역별로 설립 가능

○ (설립 · 운영 주체) 시 · 도 마을기업 협회

- 시 · 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출자한 마을기업들(법인이 출자할 것)로 주주를 구성하여 유통형 마을기업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기업 이외자의 참여인원 및 출자비율을 30% 이하로 허용

  * 다만, 사업의 적극 추진, 새로운 사업 방식의 개발, 새마을금고 등 새로운 주체의 참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달리할 수 있음

- 유통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설치

- 유통형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출자한 마을기업 대표 1/2 이상과 행안부 추천 위원 1인,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함

○ (지정요건) 법인 여부, 마을기업 참여 적극성, 자발적 추진 의지,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 (판매제품) 해당 시·도 및 전국의 마을기업 제품 중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제품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군이 겹치지 않은 선에서, 마을기업 이외의 상품을 30% 이하로 허용

○ (지원금액) 매장 규모,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규모 확정

- 보조금의 50%이상 지방비 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비 및 사업자 부담이 가능한 곳에 한정, 국비 지원

❖ 유통형 마을기업의 매장 디자인, 간판, 로고 등은 행정안전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야 함

지정절차

○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시·도 마을기업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 현지실사 및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

유통형 마을기업 준비		선정 절차 간소화		유통형 마을기업 지정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 마을 기업 협회가 설립 준비	➡	·시·군·구 심의 절차 생략 ·유통형 마을기업 소재 시·도 심사를 거쳐 사업 계획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필요시 현지실사)

Ⅵ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

1 지원기관 평가

평가개요

○ (대상기간) 해당연도 계약일 ~ 9월말까지 실적

○ (평가시기) 매년 10월

○ (평가방법)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 컨설팅, 교육, 홍보(로고 활용실적 등), 판로지원, 만족도
- (정성평가) 사업수행기관의 능력, 특화성

⇒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시(1~5위) 장관상 수여, 익년도 연속 계약 가능

※ 마을기업 시도 지원기관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Ⅶ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1 사업 예산 집행 기준

사업 실행 계획 준수

○ 예산은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7)

-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비목 내 금액조정으로 한정함

- 단, 항목 신설은 반드시 승인 필요

예) 일반운영비 내 인쇄비 → 강사비로의 조정의 경우, 내부 품의서 첨부하여 변경 내용 관리 필요,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없음

일반운영비 → 시설비로의 비목 간 조정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전에는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마을기업에서 조정 가능한 경미한 변경은 사업완료 1개월 이내에도 가능

○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2항 및 제3항」,「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마을기업 지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판로지원·컨설팅 등에 활용 가능

집행기간 준수

○ 사업비는 사업약정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약정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 불가(원인행위는 지정 통보 이후 가능)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8.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가능하며,

- 만약, 반납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조치 하여야 함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

목적 외 사용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마을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 과세사업자만 적용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공급가액의 집행은 가능하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액(부가세, 수수료 등) 집행은 불가

* 세액은 수익금으로 집행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고, 반환된 세액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

2 회계서류 작성 · 관리 기준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장부는 각 단위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예시

사업명 : 한국전통공예공방
단위 사업명 : 공예품 홍보마케팅

인출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번호	비고
7.5	330,000	홍보비	호스팅	7.5	330,000	아이호스팅	07-05-01	신용카드
7.5	770,000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5	770,000	(주)마을	07-05-02	신용카드
7.8	3,300,000	홍보비	쇼핑몰 제작	7.8	3,300,000	행복디자인	07-08-01	신용카드
7.10	1,650,000	홍보비	쇼핑봉투 제작	7.10	1,650,000	대한기획	07-10-01	신용카드
7.23	2,200,000	홍보비	리플릿 제작	7.23	2,200,000	한국인쇄	07-23-01	신용카드
7.28	1,300,000	인건비	상시근로자 인건비	7.28	1,300,000	홍길동	07-28-01	계좌이체
월계	9,550,000				9,550,000			
누계	9,550,000				9,550,000			

* '지출결의번호'는 월–일–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편철 시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

- 회계 관련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 · 편철하여야 함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예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재배 및 장 담그기)
지출내역 : 홍보 리플렛
지출금액 : 440,000원
지 급 처 : 032디자인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번호 : 07-15-01 인쇄비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50715-10000000-00027302						
공급자	등록번호	121-81-97738	종사업장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121-82-13389
	상호(법인명)	032디자인주식회사	성명	최희정		상호(법인명)	다남동주식회사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5, 201 (숭의동,숭의빌딩)				사업장주소	인천 남구 인하로119번길 13
	업태	제조업	종목	출판		업태	제조
	이메일	032pro@naver.com				이메일	73051710@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5/07/15	400,000	4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7	15	마을기업보호서				400,000	4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440,000					

e세로 본 인쇄물은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e세로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현금수령증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 발급은 원칙상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

※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만 인정하되, 사업비의 2% 이내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원 이하 인정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보조금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 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증빙자료의 수취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

○ 강사비 · 회의비 · 원고비 · 자문비 ·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창구이체, CD이체, 폰뱅킹)를 원칙으로 함

- 건별 지급액 25만원 초과 시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다수 건 일괄처리 시에도 2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

* 강사료가 350,000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 70,000원 × 0.2(세율) } + { 14,000 × 0.1(세율) }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8,250,000원 (팔백이십오만원)

단위사업명	공예품 홍보마케팅	사업기간	2016.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홍보비	호스팅	300,000	30,000	330,000원 × 1년	
2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00,000	70,000	385,000원 × 2건	
3	홍보비	쇼핑몰 제작	3,000,000	300,000	3,300,000원 × 1식	
4	홍보비	쇼핑봉투 제작	1,500,000	150,000	660원 × 2,500개	
5	홍보비	리플릿 제작	2,000,000	200,000	220원 × 10,000개	
	합계		**7,500,000**	**75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호스팅 견적서 2. 체험콘텐츠개발 계획서 및 견적서 3. 쇼핑몰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4. 쇼핑봉투 및 리플릿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8.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금액 : 금1,100,000원 (일백일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6. 00. 00	지출부 기재	2016.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7-05-01	홍보비	호스팅	330,000	30,000	아이호스팅	김대한	신용카드
07-05-02	홍보비	체험콘텐츠 개발	770,000	70,000	(주)마을	이민국	신용카드
	합계		**1,000,000**	**10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호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결과보고서(견본 및 사진 첨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8.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해당 비목 내의 금액 조정 이외의 예산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 비목 간 금액 조정, 항목 신설 등

인건비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

※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

○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지급 가능

시설비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

○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자산취득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계 · 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 비용(소액으로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비로 지출)

○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일반수용비 :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등

<홍보비>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재료비 >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①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②구입재료 관련사진 첨부

<임차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임대업체(법인)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구비

<강사비>

○ 사업수행 관련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을 준용함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마을기업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강사수당 적용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의록, 회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연료비>

○ 생산(기계설비) 및 영업활동(영업차량 사용) 등과 관련된 유류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차량운행일지 등 첨부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국내여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대중교통 또는 유류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출장 시 정액으로 지급, 초과 시에는 실비 정산 원칙

○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하며,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원칙으로 함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소모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공공요금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 기타 운영비의 총액은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운영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인정 한도액(예산편성범위)(300만원)
- 1억원 초과	300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전체 사업비의 3.0%(150만원~30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전체 사업비의 4.0%(120만원~200만원)
- 3천만원 이하	전체 사업비의 5.0%(150만원 이하)

※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기타운영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지침 준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상	지급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라.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이하)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초과) - 근무지 외(20Km 초과) - 식비(1인 1식)	- 10,000원 - 20,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 초과분 인정
	- 숙박비(1인 1실)	-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국외여비	- 국외여비	- 실비정산	

예산집행 관련 서식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장	결재

출 장 자		홍 길 동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재료 구입처 모색				
출장기간		(출) 2018년 ○○월 ○○일 (착) 2018년 ○○월 ○○일		(박 일)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신용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신용카드	
	기 타					
		음료수	800	-	현금	
	합 계		105,800			
출 장 내 용						

부산일대의 항아리 제작 업체 답사
- 마을공업(부산시 사직동)
- 다라광공(김해시 장유면)

재료판매 확인증 작성 예시

판매 확인증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일시 : 2018. 6. 21
3. 내용 : 장담그기용 국산통 40kg×35,700원=1,428,000
4. 판매자 : 나 성 실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첨부 : 판매재료 사진 2매

2018. 6. 21

판매자 나 성 실 (서명)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강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강의주제 :
5. 강사 : 나성실
   - 소속 및 직위 : 000연구소 소장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2018. 6. 21

강사 나 성 실 (서명)

회의참석 확인서 작성 예

회의참석 확인서

1. 회의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참석자 : 나성실
   - 소속 및 직위 : 000연구소 소장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2018. 6. 21

참석자 나 성 실 (서명)

회의록 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의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5. 참석인원 : 총 00명(홍길동, 나성실 …)
6. 회의내용(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
   ○ 홍 길 동 :
   ○ 나 성 실 :
   ○ 김 ○ ○ :
   ○ 최 ○ ○ :

강사비,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서식 예시

참석자 또는 강사명 (강사 등급)	강의 주제, 회의 명	강의, 회의일자 (시간)	강사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 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

000 세미나 참석자 명단(또는 등록부)

[2018.7.10. 00~00:00, ××마을기업 회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마을기업 대표	김○○	
2	○○대학 교수	이○○	
3	○○마을기업 총무	강○○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관 련 서 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

서식 1-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 인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 표 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 업 목 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 업 내 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 업 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성 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정관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2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법 인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 표 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1차년도 지정일	
사 업 목 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 업 내 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 업 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성 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정관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6.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실적보고서 1부
8. 정산보고서 1부
9. 재무제표 1부
10.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3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신청서

법 인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 표 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1차년도 지정일	
		2차년도 지정일	
사 업 목 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 업 내 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 업 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성 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 2-2) 1부
2. 現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 1차년도 지정당시 회원명단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정관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6. 실적보고서(서식4) 1부
7. 정산보고서 1부
8. 재무제표 1부
9.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 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 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8년~2020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 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 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 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 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2-2

(고도화)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그간 사업 성과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실적
- ○ 지금까지 연도별 매출 및 순이익 실적
- ○ 근로자 연도별 고용 실적(상근, 비상근 구분)
-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3. 마을기업 정체성

- ○ 조합원 현황
  - 설립당시 조합원과 비교(교체인원, 증가인원 등 설명)
- ○ 연도별 조합원의 수익분배 현황
- ○ 그간 연도별 적립금 및 재투자 금액 현황

4. 사회공헌 활동 실적

- ○ 당초 계획서상 사회공헌활동 계획 및 실적
- ○ 계획서 외 사회공헌활동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 지역문제 해결 사례 등 지역공동체 기여 실적

5. 향후 사업계획

- ○ 보조금 활용계획
- ○ 그 외 향후 추진계획

※ 사진 및 증빙자료 제출

6.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원)	역할(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 여부	사업계획동의 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비율%)
		자 부 담	천원(비율%)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내용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지역사회 공헌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금액 환산)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 00명(상시근로자 00명, 선택적 근로자 00명) ○ 총 매출액 : 000 천원 *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 감말랭이 판매 : 000천원 - 감 쥬스 판매 : 000천원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감말랭이 판매	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	국토 마트 :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 g마켓 : 1천개 판매 - 옥션 : 3천개 판매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납품 : 2천개	하나로 마트 입점 불가

〈 작성요령 〉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Ⅳ. 지역사회 공헌 성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 - 일시, 장소, 금액(환산액) 등 자세하게 기술 ○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Ⅵ. 건의사항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 - - - - - - - - -		
2	발간책자	- - - - - - - - - -		
3	프로그램			
4	포스터			
·	·			
·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 사업 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홍보물

○ 언론보도 자료 등

Ⅷ.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구 분	사업비	지출금액(B)	잔액(A-B)
합계 (단위: 백만원)	계			
	보조금			
	자부담			
신규 (1차년도)	계			
	보조금			
	자부담			
재지정 (2차년도)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1차년도, 2차년도 구분 작성)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 최종결과 보고시 Ⅷ.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Ⅸ.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5

2018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산보고서

○ 법 인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법인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총사업비)(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Ⅱ. 보조금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e나라도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단위 : 원)

통장 인출일자 (순)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번호	비고 및 증빙유형
		사업(세부)분야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 출 액				지급처		
						계	공급가액	부가세	부가세 대체입금일			
계												
<예시> 2018-09-01	330,000	판로개척	인쇄비	홍보전단제작	2018-09-01	250,000	227,270	22,730	2017-09-30		18-01-01	세금계산서
			사 무 용품비	전산잉크구매	2018-09-01	60,000	54,540	5,460	“		18-01-02	신용카드
			여비	시장조사여비	2018-09-01	20,000	20,000	-			18-01-03	출장보고서
<예시> 2018-09-03	500,000	제품생산	재료비	배추구매	2018-09-03	500,000	500,000	-			18-03-01	판매확인증

※ 작성방법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사업(세부)분야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보조금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

4)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부여

- 지출결의서(18-10-01):월별(01,02,03...), 일자별(01,02,03...), 일련번호(01,02,03...)

5) 비고 : (세금)계산서, 법인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 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

2.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잔액 (A-B)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Ⅲ. 자부담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e나라도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순)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 결의 번호	비고 및 증빙 유형
		사업 (세부) 분야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 출 액				지급처		
						계	공급가액	부가세	부가세 대체입금일			
계												
<예시> 2018-09-05	470,000	판로개척	인쇄비	책자 제작	2018-09-05	330,000	300,000	30,000	2018-09-30		18-05-01	세금 계산서
			사무 용품비	토너 구매	2018-09-05	110,000	100,000	10,000	〃		18-05-02	신용 카드
			여비	시장조사여비	2018-09-05	30,000	30,000	-			18-05-03	출장 보고서
<예시> 2018-09-08	300,000	제품생산	재료비	콩구매	2018-09-08	300,000	300,000	-			18-08-01	판매 확인증

1) 자부담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 입금 조치)

2) 비고 : (세금)계산서, 법인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 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

2.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잔액(A-B)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Ⅳ.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총매출액 ('18. 0월~12월)	수익금						
	계(A+B)	투자금 적립(A)	집행액 (B)				
			소계	재투자	배당	지역공헌	기타

서식 6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3">마을기업
현황</td><td>법인대표</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예 산
집 행</td><td colspan="5">담당자 (전화:)</td></tr>
<tr><td rowspan="2">'18년도
사업비
현황</td><td colspan="2">총 사업비</td><td colspan="2">정부지원</td><td colspan="2">자체
부담금</td></tr>
<tr><td colspan="2">천원
(100%)</td><td colspan="2">천원
(%)</td><td colspan="2">천원
(%)</td></tr>
<tr><td rowspan="2">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역</td><td rowspan="2">총지원
예정액
(A)</td><td rowspan="2">기수령액
(B)</td><td rowspan="2">기집행액
(C)</td><td colspan="2">잔액</td><td rowspan="2">신청액
(A-B)</td></tr>
<tr><td>(A-C)</td><td>(B-C)</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입금계좌</td><td colspan="6">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td></tr>
</table>

위와 같이 2018년도 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
2.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씩(보조금<자부담 포함>, 수익금) 총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6.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

2018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7

마을기업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e-mail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2018년도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변경 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8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군/구청장(이하 "시/군/구"이라 한다)과 마을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약정에 따른 "시/군/구"와(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보조금 지원 종료(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후 5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5년 경과시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의무) ① "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
2.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은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5.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자발성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군/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제출) ① “기업” 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 는 “기업” 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업” 은 마을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시/군/구”의 조사 및 점검(분기 1회, 자립형 1~2년차는 반기 1회, 3년차 이상은 연 1회)에 응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기업” 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 의 요청 또는 “시/군/구”의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
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구” 와 "기업"은(는)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신청) “기업” 은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구” 와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9

마을기업 신청 법인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마을기업명		조사자	(기초) (지원기관)	
응 답 자		일시 / 장소		
법 인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사 업 명		1차 지정 년도		
		2차 지정 년도		
공동체 구성	1.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배경은 적절한가 2.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사업 신청 및 출자에 동의 하였는가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수 및 구성, 주주명부, 특수 관계 포함여부 확인) 3. 대상 지역, 주민 참여 비율, 주민 관심과 지지는 어떠한가 (지역범위 확인, 지역주민과의 조화) 4. 마을기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지원제도 및 육성지침 숙지 정도, 설립전 및 전문 교육 이수여부) 6. 별도의 모사업 또는 모법인이 존재하지 않는가 7. 구성원은 사업 수행능력 기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특정인에게 역할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8. 마을기업회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마을기업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 통장, 설립전교육이수확인서, 전문교육이수확인서(2차년도), 각종 인·허가 관련)를 현장 확인할 것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성과 요약 제시할 것 ※ 고도화 사업의 경우 1~2차년도 사업 성과 요약 제시할 것 1-1.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옥, 판매, 유통 구조 및 범위)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3-1.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가 (수급지역, 재료비사용 비율 등)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가 5. 독창성 또는 독과점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6.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마을기업 사업의 시장경쟁력, 수익창출 구조) 7. 제품생산, 판매, 영업 등 관련 법령상 사업운영이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인허가사항, 교육사항, 사업장 소유권, 사용권, 계약기간, 임대료 등) 8. 특정업체 등에 의존적인 성격은 없는가 9. 마을기업 사업 주체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기술 등 관련)	
2차지원 추가검토	1. 1차년도 사업내용과 변경사항 (사업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각종 계약서류 등) 2. 2차년도 출자금(자부담) 확보 방법 및 변경사항 (회원구성, 출자자수, 임원, 출자금 및 출자 비중) 3. 1차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시행착오, 변수 등 특이사항 4. 1차년도 보조금으로 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및 등록 적절성, 시설 및 설비 확인 5. 제무재표확인, 순수익 적립 및 유보금 확인, 재투자 여부 확인	

<table>
<tr><th>항 목</th><th>조 사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업비
관련</td><td>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table>
<tr><td></td><td>국비</td><td>시·도비</td><td>시·군·구비</td></tr>
<tr><td>금액</td><td></td><td></td><td></td></tr>
<tr><td>총액</td><td colspan="3"></td></tr>
</table>
다. 자부담 : , (사업비의 %)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사업계획 상 경상경비(인건비, 재료비 등)의 규모는 타당한가
4. 수익금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순이익 30% 이상 적립, 50% 이상 유보금 등 확보 계획 여부)
5.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한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인건비 비율 및 기타운영비 한도)
※ 증액이나 감액 필요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
6.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td><td></td></tr>
<tr><td>자립
가능성</td><td>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기술, 유통망 등은 갖추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3. 지원 종료이후 적절한 자립 운영 계획이 있는가
4.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td><td></td></tr>
</table>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회공헌	1.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정도 등 2.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3. 지역 내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지역 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년) 2. 임금, 근무여건, 일자리의 질 등이 적절한가 3.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기존 지원실적	1. 기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지원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 지원 받을 실적이 여러건일 경우 모두 기재할 것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10

마을기업 적격 검토 확인서

항 목		내 용				비고
마을기업명				검토자		
사업명				지역	전북 김제시	
공동체성	법인설립 여부	법인명		좋은 마을기업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일		2015.6.29.		
	회원구성	출자자수	5인 이상	7명	O / X	
		지역주민수	5인 이상, 70%이상	6명	O / X	
	자발성	자부담 액수	10% 이상	6,000천원	O / X	
	구조 적합성	최고출자자의 출자비율	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17%	O / X	
지역성	지역자원 활용여부	활용자원	지역자원으로 적합여부	예〉 지역인력, 지역농산물, 지역유휴시설(경로당)	O / X	
		지역상권 출동여부		O / X (부연설명 가능, 예〉 유사업종인 분식집이 인근에 있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성격 차별화 가능)		
		지역고용 여부		O / X		
공공성	지역내 공공성	예〉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유도, 지역내 청년 주도 경제 활성화			O / X	
	공헌활동 적절성	예〉 매월 지역내 독거노인에 제품(반찬류) 기부(10만원 이상) 예정			O / X	
	기타 공공성 위반 사유 등에 해당 없음				O / X	
기타	마을기업에 자발성에 문제 없음				O / X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없음				O / X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1]에 해당 없음					

위와 같이 2018년도 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1) 지침 4쪽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내용 확인

서식 11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

기관개요	명 칭			
	소 재 지			
	기관대표			
교부신청현황	교부신청 금 액		기 교부액 금 액	
교부결정내역	교부결정액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원	원	원
	사업기간			
	일부지급 또는 부 지급시 그 사유			
교 부 조 건				

위와 같이 2018년도「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사업비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18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2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담당공무원

(작성기준일 : 2018년 월 일)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			

■ 마을기업 개요

법인명				마을기업명		
마을기업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자립형			약정 체결일	'18. . .	
보조금 교부	1차 : . . .(천원) 2차 : . . .(천원)			이행보증보험 가입일	'18. . .	
법인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기타( )					
사업자번호 (등록일)	( )	면세 여부		업태	종목	
		□ 가 □ 부				
소재지	본 점	※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장	※ 도로명주소 기재				
연락처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홈페이지			FAX		
조직현황	대표자명			회원 (조합원)수		
	실무책임자명			출자자 수		
	이사회	인원	명	집행부 회의	인원	명
		개최주기	간 1회		개최주기	간 1회
목적사업 (정관)						
주요상품						
특허 등 상품관련 획득 인증	* 특허, 상품제조 인허가, 상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상,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마을기업 현황

	구분	합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연도별 사업비 지원 (단위: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 분	총수입		총지출	이익금 [총수입-총지출]
		총매출액	정부지원금		
연도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 분	총인원	
		상시 근로자(명)	선택적 근로자(명)
연도별 고용인원 (단위: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 분	내용	① 물품기부 ② 수익금 일부 환원 ③ 불우이웃 성금 ④ 공간 제공 및 공적 공간 재생(주민 교류장소, 주민 이용장소 등) ⑤ 기회제공(문화·예술 참여, 향유, 체험 등) ⑥ 기타[ ]		
			건수	환산금액	내용(번호기입)
연도별 지역공헌 활동 (단위: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18년도 사업성과

사업내용	
현장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재물조사표

시설 · 물품명	용도	규격	내용연수	구입 · 설치일	사진	구입금액(천원)			물품 비치장소
						특교세	보조금	자부담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마을기업 점검표

○ 총 괄

법인명		지정차수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점검 내용**(해당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 로 표시)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계획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				
	고용계획 이행여부(해당지역 주민 70% 이상)				
	매출계획 이행여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약정 위반 여부				
	구성원 활동 여부(출자자 및 회원 변동여부)				
예산사용	마을기업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 여부				
	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 여부				
회계관리	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				
	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통장,장부,증빙자료 등)				
시설장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				
	재물조사표 작성여부				
	유휴 시설 및 장비 여부(미사용 방치)				

○ **점검자 의견**(점검시 불충분하거나 문제 사항(불응)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기술)

구분	점검월일	점 검 자 의 견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식 13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금 원 (금 원)		
검 사 일 자			
정산검사자	· 과 장 직 성 명 · 팀 장 직 성 명		
정산검사내역	붙임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적합	부적합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2. 자부담 집행률의 적정 여부		
	3.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적합 여부		
	4. 증빙자료 구비 · 적합 여부		
	5. 회계관리 적합여부 (별도 통장 관리, 법인 신용카드 사용 등)		
	6. 집행, 잔액 이자, 환급액 등 반납조치 여부		

「○○시 · 군 ·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 ○ 대 상 자 :
   - ○ 사업내용 :

2.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

3. 세부정산 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재 원 별 집 행 내 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융 자	
계					

4.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

붙임 : 정산 증빙자료 1부. 끝.

참 고

-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

참 고

내 용 연 수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2호, 2014.5.23>

①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② 사용기간이 4년을 경과한 기존 Windows XP가 설치된 PC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6-40호, 2016.12.13>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10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7
3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4	20101706	죠크러셔	12
5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6	20101709	볼밀	11
7	20101710	미분쇄기	11
8	20101711	록브레이커	8
9	21101501	쟁기	9
10	21101502	쇄토기	10
11	21101503	관리기	10
12	21101504	제초기	9
13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4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9
15	21101518	토양소독기	9
16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7	21101592	경운기	10
18	21101598	배토기	10
19	21101601	파종기	10
20	21101602	이식기	10
21	21101612	종자발아기	10
22	21101701	예취기	9
23	21101702	건초기	9
24	21101703	수확기	9
25	21101704	콤바인	10
26	21101705	탈곡기	10
27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8	21101709	목초결속기	9
29	21101710	수확용건조기	9
30	21101788	곡물이송기	10
31	21101801	분무기	10
32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33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4	21101897	동력살분무기	8
35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9
36	21101901	착유기	10
37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38	21101904	사료배합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9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9
40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9
41	21101982	사료절단기	9
42	21102001	정선기	9
43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9
44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5	21102005	제분기	10
46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7	21102098	선과기	9
48	21102102	압착추출기	9
49	21102202	잡목벌채기	7
50	21102204	벌목톱	7
51	21102206	임업용생장추	8
52	21102402	양잠장비	11
53	22101502	그레이더	11
54	22101505	롤러	10
55	22101525	차륜굴착기	8
56	22101526	궤도굴착기	8
57	22101528	차륜로더	8
58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8
59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0	22101595	결빙파쇄기	8
61	22101614	노면절단기	8
62	22101802	플랫폼리프트	7
63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2
64	23101512	제재기계	12
65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2
66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67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68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69	23101525	스핀들샌더	10
70	23101528	드럼샌더	10
71	23101537	벨트디스크샌더	10
72	23101580	만능목공기	10
73	23121506	편직기	11
74	23121507	제직기	11
75	23121519	실험실용방사장치	11
76	23121610	날염기	11
77	23121614	재봉기	11
78	23121616	염색시험기	11
79	23141603	피혁염색기계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0	23151502	코팅기	11
81	23151503	압출성형기	11
82	23151504	사출성형기	11
83	23151507	압축성형기	11
84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85	23151610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86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1
87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7
88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89	23152901	포장기계	11
90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0
91	23152903	진공포장기	11
92	23153298	산업용로봇	7
93	23161510	주조기	9
94	23161517	다이캐스팅머신	10
95	23161581	분사기	9
96	23161582	조형기	10
97	23161592	가마	10
98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99	23161596	전기로	11
100	23161597	도가니로	12
101	23171670	고속절단기	12
102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1
103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04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9
105	23171686	전단기	11
106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1
107	23172495	절단기	11
108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1
109	23181501	충진기	12
110	23181506	세척장치	8
111	23181507	분쇄기	8
112	23181590	햄성형기	11
113	23181594	발효기	8
114	23181604	음식물절단기	8
115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0
116	23191099	파우더혼합기	8
117	23211103	웨이퍼와이어본딩기	9
118	23211106	이온주입기	11
119	23211176	스핀코팅기	9
120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1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9
122	23211180	웨이퍼식각기	9
123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9
124	23211192	진공함침기	11
125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9
126	23211195	포토레지스트제거기	9
127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9
128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9
129	23241402	평면연삭기	12
130	23241407	원통연삭기	12
131	23241502	전해가공기	12
132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1
133	23241509	금속띠톱머신	11
134	23241511	나사절삭기	11
135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36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37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1
138	23241809	탁상드릴링머신	11
139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1
140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1
141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1
142	23242305	터릿선반	11
143	23242398	선반	11
144	23242401	수평형머시닝센터	11
145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1
146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1
147	23242507	만능밀링머신	11
148	23242509	터릿밀링머신	11
149	23242590	CNC밀링머신	11
150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51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1
152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1
153	23242612	금속조각기계	11
154	23251508	철근벤딩머신	12
155	23251601	나사전조기	11
156	23251602	판금용성형기	12
157	23251782	시트압연기	11
158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1
159	23251785	압출기	11
160	23251788	유압프레스	11
161	23261507	3D프린터	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62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63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0
164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65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0
166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0
167	23271603	납땜인두	8
168	23271707	산소아세틸렌용접기	8
169	23281591	도금장치	10
170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1
171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2
172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2
173	23990398	진공증착기	12
174	23990399	건조로	11
175	24101501	카트	8
176	24101504	핸드트럭또는액세서리	12
177	24101505	팰릿트럭	11
178	24101511	다단식운반차	11
179	24101516	동력플랫폼트럭	7
180	24101602	호이스트	11
181	24101603	지게차	8
182	24101604	리프트	8
183	24101608	권양기	9
184	24101612	잭	10
185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1
186	24101617	가위승강기또는리프트테이블	8
187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0
188	24101661	자동차리프트	11
189	24101689	주차관제장치	8
190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91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92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93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11
194	24101749	수직컨베이어	11
195	24102004	보관용선반	9
196	24102006	작업용벤치	10
197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10
198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2
199	24111805	약품탱크	10
200	24111810	저수탱크	10
201	24111816	초저온용기	9
202	24111894	액체질소통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03	24111897	온수탱크	10
204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9
205	24112404	상자	9
206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11
207	24112901	나무상자	9
208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0
209	24131503	대형냉장고	10
210	24131602	상업용냉동고	10
211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1
212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13	25111520	부표	6
214	25111527	소형보트	7
215	25111597	기동정	7
216	25111601	구명정	7
217	25111603	구조선	7
218	25111698	고무보트	7
219	25111804	카누또는카약	7
220	25111808	요트	6
221	25111899	조정경기정	6
222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8
223	25131899	무인비행기	5
224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25	25173813	자동변속기	7
226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8
227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1
228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7
229	25174892	모래살포기	7
230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8
231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7
232	25175111	패키지용품	5
233	25179997	차량용냉방기	7
234	25181717	저상형트레일러	9
235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9
236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9
237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7
238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8
239	25191522	항공기엔진정비세트	7
240	25191588	항공기공압시동장비	8
241	25191701	차륜평형기	10
242	25191702	차륜정렬기	10
243	25191739	조타장치모의시험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44	25191797	차량세차기	8
245	25191808	브레이크시험기	11
246	25191810	섀시동력계	6
247	25191821	엔진모의시험기	9
248	25191822	엔진인젝터시험기	10
249	25191824	엔진튜업시험기	11
250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0
251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9
252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53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0
254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8
255	25231036	철도용모니터	5
256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1
257	26101205	서보모터	9
258	26101212	스핀들모터	9
259	26101504	디젤엔진	9
260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7
261	26101593	가솔린엔진	9
262	26111601	디젤발전기	11
263	26111604	가스발전기	11
264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11
265	26111611	보조발전기	11
266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1
267	26111704	충전장치	9
268	26111719	배터리시험기	9
269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0
270	27111511	선재절단기	11
271	27111715	토크렌치	8
272	27111802	수준기	11
273	27111814	검사용거울	7
274	27111822	각폭측정기	10
275	27111826	정밀정반	12
276	27112014	잔디깎는기계	11
277	27112035	동력전정기	8
278	27112043	수목진단기	9
279	27112046	잔디청소기	9
280	27112703	전동드릴	9
281	27112704	전동그라인더	8
282	27112706	전동대패	10
283	27112707	핸드라우터	8
284	27112709	전기톱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85	27112739	벨트샌더	8
286	27112742	디스크샌더	8
287	27112799	전기절단기	11
288	27112809	공구정리대	9
289	27113201	일반도구키트	8
290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8
291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8
292	30161505	벽패널	8
293	30171505	금속문	8
294	30181502	비데	6
295	30181504	세면기	7
296	30191501	사다리	10
297	30201705	이동식부스	10
298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0
299	30221099	무대장치	8
300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01	30231602	이동식화장실	8
302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9
303	31162801	손잡이	9
304	31241501	렌즈	8
305	31242104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10
306	31242107	광학실험대	9
307	32101514	증폭기	11
308	32101519	검파기	11
309	32101528	변조기	9
310	32101617	스마트카드	7
311	32111706	수정발진기	11
312	32121616	조정저항기	8
313	32121701	정류기	11
314	32121704	정적변환기	8
315	32131002	반도체다이	9
316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10
317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318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0
319	32141009	광전관	6
320	39101615	수은램프	5
321	39101616	자외선램프	8
322	39111501	형광등기구	5
323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9
324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9
325	39111611	투광조명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26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9
327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10
328	39111709	비상조명장치	8
329	39112012	핸드또는연장조명	7
330	39121001	배전용변압기	10
331	39121002	전력용변압기	10
332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0
333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34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0
335	39121008	신호변환기	10
336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37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0
338	39121030	지상변압기	10
339	39121083	전동발전기	10
340	39121101	분전반	10
341	39121103	배전반	10
342	39121104	전동기제어반	10
343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0
344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345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8
346	39121308	아웃렛박스	8
347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48	39121521	모터시동기	10
349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50	39121610	서지방지장치	9
351	39121621	피뢰장치및액세서리	9
352	39121635	전압조정기	10
353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10
354	39122171	전주	10
355	40101502	배기장치	7
356	40101601	송풍기	8
357	40101602	공기순환기	7
358	40101701	냉방기	10
359	40101708	팬코일유닛	9
360	40101709	공기조화기	9
361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0
362	40101711	터보냉동기	10
363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9
364	40101715	항온항습기	9
365	40101716	냉각탑	10
366	40101787	냉난방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67	40101802	열교환장치	10
368	40101806	열펌프	9
369	40101808	스토브	7
370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371	40101826	상업용온수기	7
372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8
373	40101866	온풍난방기	10
374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0
375	40101902	제습기	10
376	40102001	연관보일러	11
377	40102002	수관보일러	11
378	40102003	전기보일러	11
379	40102007	소형기름보일러	10
380	40102091	입형보일러	11
381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382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383	40141609	제어밸브	10
384	40142201	가스조절기	10
385	40151502	진공펌프	11
386	40151503	원심펌프	11
387	40151505	정량펌프	11
388	40151513	수중펌프	11
389	40151551	기어펌프	11
390	40151566	부스터펌프	11
391	40151597	엔진펌프	9
392	40151599	자동펌프	11
393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394	40151606	왕복압축기	12
395	40151608	회전압축기	12
396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0
397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2
398	40161502	워터필터	7
399	40161503	집진기	10
400	40161602	공기청정기	9
401	40161605	탈취기	8
402	4016160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9
403	40161699	공기살균기	7
404	40161701	원심분리기	10
405	40161799	오일분리기	10
406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07	41101504	균질화기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408	41101518	실험실용혼합기및유화기	8
409	41101701	실험실용밀	10
410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9
411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1
412	41101708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0
413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0
414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0
415	41101805	자속계	10
416	41101806	자력계	10
417	41101807	전자회절장치	9
418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0
419	41101813	엑스선장치제어기	9
420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0
421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0
422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0
423	41102407	보온함	10
424	41102412	열풍기	8
425	41102423	교반가열판	9
426	41102513	곤충관찰장치	8
427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28	41102608	동물실험장치	7
429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0
430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0
431	41102910	조직배양장치	9
432	41102914	초음파분쇄기	10
433	41102916	마이크로톰	10
434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9
435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9
436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8
437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0
438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6
439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1
440	41103303	농도계	10
441	41103311	유체압력계	10
442	41103312	점도계	10
443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0
444	41103324	실험실용조파장치	10
445	41103325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0
446	41103326	풍동실험장치	10
447	41103327	유속계	10
448	41103385	농도측정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449	41103386	밀도측정기	10
450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0
451	41103406	무균함	10
452	41103415	무균대	10
453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54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0
455	41103491	항온항습조	10
456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9
457	41103515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0
458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459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10
460	41103701	순환식수조	10
461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462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0
463	41103706	항온수조	10
464	41103712	용액순환기	10
465	41103799	실험실용물통	8
466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0
467	41103806	자력교반기	11
468	41103810	오버헤드교반기	11
469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0
470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0
471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10
472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0
473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0
474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0
475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0
476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477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0
478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9
479	41103908	진공원심분리기	10
480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1
481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0
482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483	41104021	분액수집기	11
484	41104022	시편제작기	11
485	41104098	시료채취기	10
486	41104118	표본채취기	9
487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488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0
489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490	41104207	용수분석기	10
491	41104301	표준발효실험유닛	10
492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0
493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10
494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0
495	41104405	진탕배양기	10
496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9
497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10
498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499	41104509	진공오븐	10
500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0
501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0
502	41104601	실험용박스로	10
503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0
504	41104613	고온가압로	9
505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1
506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0
507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0
508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0
509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0
510	41104807	지방추출기	9
511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12	41104814	실험용열교환응축기	10
513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0
514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0
515	41104819	세포모음장치	10
516	41104896	용출시험기	9
517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10
518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0
519	41105002	실험실용분급기기	10
520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0
521	41105102	연동펌프	11
522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10
523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9
524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0
525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0
526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527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8
528	41105521	유전자검출기	10
529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0
530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31	41106701	엽면적계	10
532	41106702	광합성측정장치	10
533	41106703	식물생장계	10
534	41106704	엽록소측정기	9
535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10
536	41111502	실험용저울	12
537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1
538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2
539	41111507	벤치스케일	10
540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41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8
542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악세서리	9
543	41111517	분석저울	11
544	41111519	크레인저울	10
545	41111526	자동선별용저울	10
546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0
547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0
548	41111613	거리측정기	10
549	41111614	높이게이지	10
550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0
551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2
552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53	41111669	두께게이지	11
554	41111678	만능측장기	11
555	41111703	실체현미경	11
556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557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0
558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59	41111711	전자현미경	11
560	41111712	역상현미경	10
561	41111713	확대경	9
562	41111715	망원경	10
563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564	41111717	쌍안경	9
565	41111718	금속현미경	11
566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10
567	41111721	투과전자현미경(TEM)	10
568	41111722	형광현미경	9
569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	10
570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9
571	41111725	편광현미경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72	41111727	투사현미경	11
573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10
574	4111174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8
575	4111174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1
576	4111174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0
577	41111747	산업용내시경	9
578	41111749	위상차현미경	9
579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580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1
581	4111180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582	41111815	철근탐지기	11
583	41111816	변위측정기	11
584	41111817	식미검정기	7
585	41111905	전자탐침봉	9
586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2
587	41111910	멀티펜기록계	10
588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1
589	41111916	비접촉센서	10
590	41111920	3차원측정기	9
591	41111921	속도감지기	7
592	41111926	근접감지기	6
593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594	41111939	음향탐지기	10
595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0
596	41111970	온도감지기	10
597	41111973	미립자계수기	7
598	41111975	자기탐지기	8
599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10
600	41112108	로드셀	10
601	41112113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0
602	41112114	온습도트랜스미터	10
603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0
604	41112201	열량계	11
605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06	41112204	고온계	10
607	41112205	온도조절기	10
608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09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10	41112213	휴대용온도계	10
611	41112228	연소효율측정기	10
612	41112233	녹는점측정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613	41112234	열류계	9
614	41112301	습도계	8
615	41112302	건습계	11
616	41112303	온습도측정기	10
617	41112304	수분계	10
618	41112401	깊이측정기	9
619	41112404	압력조정기	8
620	41112406	진공측정기	11
621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622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9
623	41112411	압력조절기	10
624	41112414	압력검교정장비	9
625	41112416	내압시험기	10
626	41112418	모세관압측정기	9
627	41112422	수압시험기	10
628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0
629	41112501	유량계	11
630	41112502	레오미터	10
631	41112508	가스미터	10
632	41112701	곡물분석기	9
633	41112702	종자계수기	10
634	41112801	속도계	10
635	41112802	회전계	10
636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10
637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0
638	41112903	육분의	11
639	41112906	전파표지	9
640	41113009	열차별분석기	11
641	41113024	액체비중계	8
642	41113027	삼투압측정기	10
643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10
644	41113031	당도계	10
645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46	41113040	콜로니카운터	8
647	41113041	원소분석기	10
648	41113042	우유분석기	9
649	41113046	점착시험기	10
650	41113048	견뢰도시험기	10
651	41113049	연소분석기	10
652	41113051	산화환원측정기	10
653	41113057	오니농도측정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654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0
655	41113099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	9
656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0
657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58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0
659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9
660	41113110	산소분석기	10
661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62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0
663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1
664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10
665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666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667	41113124	물질대사가스분석기	9
668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0
669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0
670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671	41113311	할로겐분석기	9
672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673	41113319	수질분석기	10
674	41113322	질소,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1
675	41113326	도료입도측정기	10
676	41113327	필름애플리게이터	10
677	41113328	수은분석기	10
678	41113331	동결융해시험장치	9
679	41113333	계면동전위측정장치	9
680	41113338	BOD측정기	10
681	41113339	COD측정기	10
682	41113380	비표면적측정장치	10
683	41113399	유동화실험장치	9
684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685	41113601	전류계	10
686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0
687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9
688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0
689	41113619	검류계	11
690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1
691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10
692	41113624	절연시험기	10
693	41113630	멀티미터	10
694	41113631	저항계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695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0
696	41113633	전위차계	11
697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1
698	41113638	오실로스코프	10
699	41113639	가속도계	9
700	41113640	유효전력계	10
701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0
702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03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0
704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0
705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0
706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0
707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08	41113672	계전기시험기	9
709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0
710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11	41113677	내전압시험기	9
712	41113682	전력시험기	10
713	41113686	클램프테스터	8
714	41113689	종합계측기	9
715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716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0
717	41113695	펄스측정기	10
718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0
719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0
720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0
721	41113702	비교측정기	10
722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0
723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10
724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0
725	41113708	전력계	10
726	41113709	변조측정기	10
727	41113710	레벨미터	10
728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0
729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9
730	41113720	전송량측정기	10
731	41113721	영상신호측정기	9
732	41113722	전자파장해시험기	9
733	41113723	무선장비시험기	10
734	41113725	광파워미터	9
735	41113727	왜율측정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36	41113728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8
737	41113729	증폭기출력계	10
738	41113730	텔레비전시험기	10
739	41113732	증폭기시험기	10
740	41113733	안테나시험기	9
741	41113735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0
742	41113737	잡음측정기	10
743	41113739	전자파내성시험기(EMS)	9
744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8
745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0
746	41113794	수신측정기	10
747	41113797	광섬유실험장치	7
748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49	41113808	중력계	11
750	41113809	지질탐지기	9
751	41113811	지내력시험기	10
752	41113812	지반마찰시험기	10
753	41113816	압밀시험기	10
754	41113818	평판재하시험기	11
755	41113819	토양분석기	10
756	41113821	토질관입시험기	10
757	41113822	흙지지력비시험기	10
758	41113824	토질투수시험기	10
759	41113827	일축압축시험기	7
760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0
761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0
762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1
763	41113904	경도측정기	10
764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65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0
766	41113996	채니기	8
767	41114001	경사계	8
768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8
769	41114107	지진계	9
770	41114204	경위의	10
771	41114212	사진판독확대경	10
772	41114213	정밀좌표측정기	10
773	41114215	측고기	9
774	41114220	전경의	10
775	41114294	구적계	10
776	41114401	풍속계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77	41114402	기압계	10
778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779	41114405	강우량기록계	10
780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9
781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0
782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9
783	41114410	기상관측장비	10
784	4111441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0
785	4111441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786	41114415	낙뢰분석장비	10
787	41114417	기상관측부이	8
788	4111441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0
789	41114419	저층난류경보장비	7
790	4111442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8
791	41114427	풍향계	10
792	41114496	해양측정기기	8
793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794	41114501	동력계	10
795	41114502	탄력계	10
796	41114503	신장계	9
797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0
798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799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00	41114511	유연도시험기	10
801	41114514	비틀림진동측정기	10
802	41114516	절삭력측정장치	10
803	41114519	예인전차시스템	10
804	41114521	공기압축기시험기	10
805	41114524	유압(油壓)시험기	10
806	41114528	선박동요측정기	10
807	41114530	접착강도시험기	10
808	41114562	물성시험기	10
809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0
810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8
811	41114586	노화시험기	10
812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813	41114601	마모시험기	11
814	41114602	압축시험기	11
815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816	41114604	부식시험기	10
817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18	41114606	크리프시험기	11
819	41114608	피로시험기	11
820	41114611	경도검사기	11
821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1
822	41114614	금속검사기	10
823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824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0
825	41114621	장력검사기	11
826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0
827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828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1
829	41114629	가열변형시험기	11
830	41114630	열충격시험기	10
831	41114631	응력시험기	11
832	41114632	인장강도시험기	11
833	41114633	열팽창시험기	10
834	41114634	에릭슨시험기	11
835	41114636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1
836	41114637	빔실험장치	9
837	41114638	하중시험기	9
838	41114640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9
839	41114644	공기량측정기	10
840	41114648	유동성시험기	10
841	41114650	몰드	8
842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843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0
844	41114709	실검사기	10
845	41114715	섬유또는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0
846	41114722	인열강도(引裂强度)시험기	11
847	41114723	파열강도(破裂强度)시험기	11
848	41114791	직물촉감시험기	11
849	41115102	측각기	9
850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51	41115203	기상레이더	9
852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1
853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1
854	41115306	간섭계	10
855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0
856	41115309	조도계	11
857	41115311	광도계	11
858	41115313	휴대용굴절계또는편광계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59	41115314	편광계	11
860	41115315	편광기	10
861	41115316	반사계	10
862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10
863	41115318	비색계	10
864	41115320	신호발생기	10
865	41115323	함수발생기	10
866	41115327	광전측정기기	10
867	41115328	파형합성기	10
868	41115329	전파측정장치	9
869	41115330	불투명측정기	8
870	41115331	광택도측정기	10
871	41115332	광파장측정기	9
872	41115333	광자수측정기	10
873	41115334	백색도측정기	10
874	41115335	벡터스코프	9
875	41115336	실험실용자외선등	10
876	41115337	파형측정기	10
877	41115338	휘도측정기	9
878	41115339	일립소미터	9
879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880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0
881	41115403	분광계	10
882	41115404	질량분석기	9
883	41115406	분광광도계	10
884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0
885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0
886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0
887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888	41115412	분광복사계	9
889	41115413	세포분석기	10
890	41115414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0
891	41115415	전자분광분석기(ESCA)	9
892	41115416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0
893	41115501	소나	11
894	41115503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0
895	41115507	음성특성시험기	10
896	41115513	음향발생장치	9
897	41115515	하이드로폰	9
898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1
899	41115603	pH측정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900	41115608	이온선택전극	9
901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0
902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0
903	41115613	염분검출기	10
904	41115615	수소이온농도조절기	9
905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0
906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907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908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0
909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910	41115821	미생물분석기	9
911	41115823	단백질분석기	9
912	41115832	항생물질검사기	10
913	41116107	화학품질관리,측정기또는표준	10
914	41116303	방화도시험기	9
915	41119905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916	41119909	혈액가스분석기	8
917	41119914	혈액응고시간분석기	9
918	41119917	의료용분광광도계	7
919	41119928	의료용효소분석기	10
920	41119933	혈액상자동분석장치	8
921	41119937	자동염색기구	9
922	41119940	요화학분석기	10
923	41119953	표본가공기	8
924	41119956	의료용세포·조직배양기	8
925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926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페터	9
927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0
928	41121516	디스펜서	10
929	41121808	실험용뷰렛	10
930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0
931	41122203	금속도가니	12
932	41122805	건조용랙	10
933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0
934	41123002	캐비닛형데시케이터	8
935	41123004	진공데시케이터	8
936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1
937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938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939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9
940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941	42143502	비세척장치또는액세서리	9
942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9
943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0
944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0
945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0
946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947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948	42171802	응급의료용후두경키트	8
949	421720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8
950	42172013	응급의료용후송키트	8
951	42172101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7
952	42181504	혈구계수기세트	10
953	42181535	생체신호처리장치	8
954	42181602	전자혈압계	8
955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956	42181701	심전도기	10
957	42181712	심전도장치분석기	9
958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8
959	42181722	맥파분석기	9
960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8
961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8
962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인장치또는액세서리	9
963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10
964	42182310	근전도기	9
965	42182314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	9
966	42182401	청력계또는액세서리	9
967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0
968	42182803	범용병상또는테이블체중계	10
969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970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971	42191602	수술실조명또는액세서리	9
972	42191807	범용간호침상또는액세서리	9
973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974	42192001	범용검진또는시술용테이블	8
975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976	42192210	휠체어	9
977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978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7
979	42199098	혈액냉동고	10
980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9
981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982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983	42201799	초음파뇌조영장치	9
984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10
985	42201813	의료용방사선단층촬영장치	8
986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987	4220189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10
988	4220189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
989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990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10
991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992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993	42211503	자세교정기	8
994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7
995	42211797	약시인용확대장치	9
996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9
997	42251502	인지수동기민성지각감각평가또는검사제품	11
998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액세서리	9
999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페달운동	9
1000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9
1001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8
1002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03	42261806	시신냉동고	9
1004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9
1005	42271605	폐기능계량기	9
1006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9
1007	42271701	의료용가스실린더또는관련장치	8
1008	42271703	산소혼합기	8
1009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10
1010	42272501	가스마취기	10
1011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1012	42281503	필터멸균기	9
1013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1014	42281531	의료용자외선소독기	8
1015	42281596	고압멸균기	10
1016	42281705	의료기기및기구용살균세척기기	8
1017	42281712	초음파세척기	8
1018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1019	42291612	수술용골겸자	8
1020	42294895	위내시경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021	42295007	내시경용영상장치또는액세서리	8
1022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8
1023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9
1024	42295121	수술용현미경,루페,확대기또는액세서리	9
1025	42301502	의학교육또는실습용마네킹	10
1026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10
1027	43191501	휴대전화기	4
1028	43191504	유선전화기	8
1029	43191508	디지털전화기	8
1030	43191510	양방향라디오	6
1031	43191513	화상전화기	6
1032	43191514	위성전화기	8
1033	43191516	키폰주장치	9
1034	43191633	키폰전화기	8
1035	43191634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1036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5
1037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5
1038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1039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5
1040	43201416	데이터수집보드	5
1041	43201417	멀티미디어용통합형보드	5
1042	43201503	중앙처리장치	6
1043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5
1044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5
1045	43201537	프린트서버	6
1046	43201540	채널변환기	7
1047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6
1048	43201553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6
1049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6
1050	43201614	콘솔익스텐더	5
1051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6
1052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6
1053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6
1054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8
1055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5
1056	43201817	CD드라이브	5
1057	43201818	DVD드라이브	5
1058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5
1059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60	43201832	주크박스	7
1061	4320183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062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5
1063	43201999	하드디스크파기장치	7
1064	43202002	공테이프	5
1065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5
1066	43211501	컴퓨터서버	6
1067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68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6
1069	43211505	POS터미널	5
1070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5
1071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72	43211509	태블릿컴퓨터	4
1073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7
1074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7
1075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5
1076	43211593	일체형컴퓨터	5
1077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5
1078	43211595	멀티스크린컴퓨터	5
1079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080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5
1081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9
1082	43211699	신호처리기	6
1083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5
1084	43211706	키보드	5
1085	43211711	스캐너	6
1086	43211712	그래픽태블릿	5
1087	43211714	생체인식장비	7
1088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9
1089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10
1090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8
1091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8
1092	43211798	자료수집장치	9
1093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1094	43211901	CRT모니터	5
1095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096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5
1097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5
1098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5
1099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00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1101	43212107	플로터프린터	5
1102	43212110	다기능프린터	5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03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5
1104	43212115	바코드프린터	5
1105	43212199	프린터제어기	5
1106	43221501	자동안내장치	8
1107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9
1108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1109	43221525	인터콤시스템	6
1110	43221527	도청방지기	9
1111	43221706	라디오안테나	9
1112	43221711	위성접속장비	8
1113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9
1114	43221727	안테나주변기기	8
1115	43221728	레이돔	8
1116	43221729	휴대용안테나	9
1117	43221788	분배기	9
1118	43221810	광다중화장치	6
1119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8
1120	43222501	방화벽장치	5
1121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6
1122	43222607	캐시엔진장비	5
1123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8
1124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7
1125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7
1126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6
1127	43222615	SAN스위치	6
1128	43222619	비디오네트워킹장비	6
1129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6
1130	43222628	모뎀	6
1131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5
1132	43222642	라우팅스위쳐	8
1133	43222643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134	4322264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6
1135	43222695	다중통신장비	9
1136	43222696	동보장치	8
1137	43222704	전신교환기	8
1138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0
1139	43222817	통신용중계기	8
1140	43222818	배선반	10
1141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10
1142	43222826	반송단국장치	10
1143	43222827	다중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44	43222903	통신용탑	9
1145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9
1146	43232614	캐드캠시스템	5
1147	44101501	복사기	6
1148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1149	44101510	기상FAX	6
1150	44101599	팩스기기	6
1151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9
1152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10
1153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1
1154	44101703	듀플렉서장치	4
1155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6
1156	44101716	천공기	10
1157	44101730	문서자동분류장치	6
1158	44101902	수표발행기	10
1159	44102103	우편물봉합기	7
1160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7
1161	44102304	봉인기계	7
1162	44102306	결속기계	10
1163	44102403	카드인쇄기	8
1164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65	44102602	타자기	8
1166	44102604	속기기계	6
1167	44102801	래미네이터	10
1168	44102805	제본천공기	10
1169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8
1170	44111512	책꽂이	8
1171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8
1172	44111816	도화기	10
1173	44111891	제도판	10
1174	44111893	면적계	10
1175	44111895	제도기	10
1176	44111901	일정기록판및액세서리	10
1177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액세서리	8
1178	44111906	칠판또는액세서리	8
1179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7
1180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6
1181	44121511	우편함	9
1182	44121611	제지용펀치	9
1183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6
1184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85	45101504	평판인쇄기	11
1186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187	45101507	인쇄기	11
1188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189	45101804	제본기	11
1190	45101806	정합기	12
1191	45101902	제판기	12
1192	45111603	영사용스크린	9
1193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9
1194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9
1195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0
1196	45111610	실물환등기	9
1197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
1198	45111619	필름릴	6
1199	45111620	슬라이드복사기	8
1200	45111697	영사대	8
1201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0
1202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7
1203	45111712	테이프복사기	7
1204	45111713	음향분배증폭기	8
1205	45111714	오디오AD변환기	8
1206	45111716	디지털오디오편집기	6
1207	45111721	릴테잎녹음기	9
1208	45111722	카세트덱	9
1209	45111723	하드디스크레코더	5
1210	45111765	스피커제어유닛	9
1211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9
1212	45111767	리모트앰프	9
1213	45111775	음향합성기	8
1214	45111784	오디오모니터	8
1215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1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9
1217	45111810	실물화상기	8
1218	45111811	영상모니터	6
1219	45111814	디지털영상효과기	6
1220	45111815	오디오비디오콘솔	8
1221	45111816	로고발생기	8
1222	45111817	방송용문자발생기	8
1223	45111819	비디오믹서	7
1224	45111820	비디오프로세싱앰프	6
1225	45111821	동기신호발생기	5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26	45111826	MPEG엔코더	5
1227	45111828	프롬프터	5
1228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
1229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5
1230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231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0
1232	45121501	스틸카메라	9
1233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234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0
1235	45121510	항공카메라	9
1236	45121511	고속카메라	8
1237	45121512	수중카메라	8
1238	45121514	복사용카메라	8
1239	45121516	디지탈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240	45121520	웹카메라	8
1241	45121522	적외선카메라	8
1242	45121523	천체사진기	8
1243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
1244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8
1245	45121602	카메라삼각대	8
1246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8
1247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9
1248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8
1249	45121609	카메라받침대	8
1250	45121612	카메라테이블	8
1251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8
1252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8
1253	45121697	반사경	8
1254	45121701	필름건조기	9
1255	45121704	필름편집기	9
1256	45121705	사진확대기	9
1257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8
1258	45121712	필름편집대	8
1259	45121714	필름리더	5
1260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1
1261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8
1262	45141693	인화기구	10
1263	46111702	적외선탐지기	10
1264	46111703	적외선방사기	10
1265	46111705	적외선망원경	9
1266	46151501	바리케이드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67	46151503	폭동진압용방패	9
1268	46151604	음주측정기	7
1269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1
1270	46151608	폭탄방호장치및용품	11
1271	46151609	신분증판독기	9
1272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9
1273	46151711	족흔적채취기	10
1274	46151715	지문인식장비	9
1275	46151716	거짓말탐지기	9
1276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10
1277	46161503	선박신호장비	8
1278	46161504	교통신호등	9
1279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9
1280	46161526	보행자감지기	9
1281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282	46161581	교통량측정기	9
1283	46161588	선박신호조명	8
1284	46161702	구조용에어백	11
1285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11
1286	46161706	에어텐트	11
1287	46161708	구조망	8
1288	46161793	구조용조명등	11
1289	46171506	금고	11
1290	46171603	시간기록계	11
1291	46171604	경보장치	9
1292	46171610	보안용카메라	8
1293	46171612	비디오모니터	7
1294	46171613	가스경보기	9
1295	46171616	레이더탐지기	9
1296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9
1297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8
1298	46171624	엑스레이화물검색기	10
1299	46171625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00	46171626	야간투시경	10
1301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9
1302	46171634	탐지지	8
1303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04	46171636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8
1305	46171673	영상분배기	6
1306	46171678	감청장비	10
1307	46171681	도난방지기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08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7
1309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10
1310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8
1311	46181502	방탄조끼	9
1312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7
1313	46181518	방열복	11
1314	46181528	보호용작업복	7
1315	46181704	안전헬멧	8
1316	46182003	가스마스크	7
1317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11
1318	46182401	오염제거기	11
1319	46182599	호신장비	8
1320	46191502	열감지기	8
1321	46191510	열상관측장비	7
1322	46191601	소화용기구	9
1323	46191605	소방용수지식공구	8
1324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9
1325	46191612	등짐펌프	9
1326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8
1327	46191621	소화장비보관함	8
1328	46191683	소방용펌프	9
1329	46201001	구조실습용마네킨	9
1330	47101505	염소처리장비	7
1331	47101511	이온교환장치	9
1332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0
1333	47101513	산소발생기	7
1334	47101514	정수장비	10
1335	47101516	탁도계	12
1336	47101517	자외선살균기	10
1337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1
1338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339	47101529	소각로	11
1340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2
1341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342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343	47111599	스포팅기	6
1344	47121602	진공청소기	7
1345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7
1346	47121612	건식바닥청소기	7
1347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9
1348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49	48101505	상업용커피메이커및아이스티메이커	5
1350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1351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1352	48101511	상업용그리들	7
1353	48101517	상업용오븐	7
1354	48101521	상업용레인지	7
1355	48101524	상업용찜통	8
1356	48101529	압력조리기구또는압력튀김기	6
1357	48101530	상업용밥솥	7
1358	48101546	탕약기계	6
1359	48101595	만능조리기	7
1360	48101601	상업용혼합기	7
1361	48101607	상업용주서기	7
1362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363	48101610	상업용필러	7
1364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7
1365	48101710	음수기	7
1366	48101711	냉온수기	7
1367	48101714	온수제조기	8
1368	48101799	정수기	7
1369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1370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7
1371	48101819	손소독기	5
1372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6
1373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7
1374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6
1375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9
1376	48102096	상업용싱크대	8
1377	48102097	배식대	7
1378	48102103	냉장진열장	11
1379	48102199	냉동시스템	11
1380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1
1381	48111109	자동구두광택기	6
1382	48111301	티켓발급기	10
1383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384	49101601	골동품및고미술품	6
1385	49121503	텐트	9
1386	49121595	위장용천	6
1387	49141501	부력조절기	5
1388	49141506	습식잠수복	7
1389	49141508	구명총	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90	49141510	잠수기	7
1391	49141605	서프보드	8
1392	49141699	수상오토바이	7
1393	49151502	스키	8
1394	49161508	투구기	8
1395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8
1396	49171508	구름판	8
1397	49181501	당구대	8
1398	49181507	탁구대	8
1399	49181698	사격총	5
1400	49201501	트레드밀	7
1401	49201502	스태퍼	8
1402	49201517	거꾸리	8
1403	49201596	워킹머신	7
1404	49201602	바벨	12
1405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8
1406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07	49201611	종합운동기구	8
1408	49201612	운동시설물	7
1409	49211603	골프클럽	8
1410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9
1411	49211808	지방측정용도구	8
1412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7
1413	49211811	에르고미터	8
1414	49211812	몸통굴절측정기	8
1415	49211814	피로도측정기	8
1416	49211815	전신반응측정기	10
1417	49211817	근력측정기	7
1418	49211819	동작분석기	8
1419	49211823	인체측정기	11
1420	49211825	지능검사장치	7
1421	49211833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22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23	49221502	골대	11
1424	49221503	헤드기어를제외한안전용품	8
1425	49221506	운동용매트	9
1426	49221518	네트용지주	10
1427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7
1428	49221529	펜싱심판기	6
1429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9
1430	49221584	농구대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431	49241511	퍼걸러	10
1432	52131501	커튼	6
1433	52131602	롤업셰이드	7
1434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435	52141554	김치냉장고	7
1436	52141601	가정용세탁기	6
1437	52141604	신발건조기	6
1438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1
1439	52151650	가정용싱크대	8
1440	52152202	식기건조대	10
1441	52152204	가정용조리대	6
1442	52161505	텔레비전	8
1443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7
1444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8
1445	52161512	스피커	9
1446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8
1447	52161514	헤드폰	5
1448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7
1449	52161517	이퀄라이저	7
1450	52161518	GPS수신기	8
1451	52161520	마이크로폰	9
1452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9
1453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0
1454	52161526	위성수신기	7
1455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0
1456	52161532	음악반주기	7
1457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5
1458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7
1459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8
1460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6
1461	52161540	비디오스위쳐	8
1462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6
1463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1464	52161547	오디오앰프	8
1465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7
1466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8
1467	52161555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4
1468	53102798	소방복	8
1469	55121718	안내판	8
1470	55121903	전광판	8
1471	55121904	광고판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472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7
1473	56101502	소파	8
1474	56101507	책장	8
1475	56101508	매트리스	7
1476	56101510	가리개용칸막이	8
1477	56101515	침대	9
1478	56101516	장롱	9
1479	56101519	응접탁자	8
1480	56101520	로커	9
1481	56101530	캐비닛	8
1482	56101531	신발장	8
1483	56101537	화장대	8
1484	56101538	찬장	9
1485	56101544	거울	7
1486	56101595	기타미분류가구	8
1487	56101601	파라솔	6
1488	56101606	화분대	8
1489	56101701	크레덴자	10
1490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9
1491	56101703	책상	8
1492	56101705	유리진열장	6
1493	56101706	회의용탁자	8
1494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8
1495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9
1496	56101791	신문걸이대	12
1497	56101793	보조책상	8
149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1
1499	56111997	이발용의자	9
1500	56112102	작업용의자	8
1501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9
1502	56121002	카운터	9
1503	56121004	카드함	8
1504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05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0
1506	56121099	이동식서가	11
1507	56121508	컴퓨터책상	8
1508	56121597	교단	8
1509	56121598	교탁	9
1510	56121798	칠판보조장	8
1511	56121804	강연대	9
1512	56121902	전시용진열대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13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8
1514	56122001	실험대	11
1515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1
1516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9
1517	60102798	지각운동학습기구	6
1518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9
1519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10
1520	60103931	동물체,동물체일부또는장기표본	10
1521	60104101	신체,체절또는조직모델	10
1522	60104107	동물체,체절또는조직모델	10
1523	60104402	암석표본	9
1524	60104403	화석	9
1525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0
1526	60104509	연료전지	7
1527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10
1528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0
1529	60104607	진자기	10
1530	60104615	역학활주대	10
1531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9
1532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1
1533	60104718	원심펌프실험장치	9
1534	60104721	관성능률실험장치	10
1535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536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0
1537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0
1538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0
1539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9
1540	60104807	공명장치	8
1541	60104809	파동장치	10
1542	60104810	분광기	11
1543	60104811	스펙트럼차트	10
1544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10
1545	60104817	수파투영장치	10
1546	60104824	파동광학실험장치	10
1547	60104825	홀로그래피시험장치	10
1548	60104826	광학용비경	10
1549	60104903	정전기키트	8
1550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8
1551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552	60104908	전자기장치	9
1553	60104909	자기장치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54	60104910	전자석	8
1555	60104923	방전자	7
1556	60104924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8
1557	60104925	플레밍(Fleming)의법칙실험장치	8
1558	60104926	홀(Hall)효과실험장치	8
1559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0
1560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9
1561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8
1562	60105910	유아시뮬레이터및보조품	8
1563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8
1564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8
1565	60106208	의료교육자료	8
1566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0
1567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0
1568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0
1569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0
1570	60106501	불상	9
1571	60106608	협응동작반응검사기	8
1572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9
1573	60109798	사격장비	7
1574	60109899	실물모형	6
1575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1
1576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8
1577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9
1578	60124306	도예용물레	10
1579	60131001	피아노	11
1580	60131003	오르간	11
1581	60131006	신시사이저	9
1582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0
1583	60131101	트럼펫	8
1584	60131102	트럼본	8
1585	60131104	색소폰	8
1586	60131108	프렌치호른	8
1587	60131114	튜바	8
1588	60131201	클라리넷	8
1589	60131211	대금(大芩)	8
1590	60131310	가야금	8
1591	60131311	거문고	8
1592	60131312	아쟁(牙箏)	8
1593	60131319	해금(奚金)	8
1594	60131322	양금(洋琴)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95	60131397	콘트라베이스	8
1596	60131405	서양북	8
1597	60131406	실로폰	8
1598	60131411	북	7
1599	60131444	팀파니	8
1600	60131448	마림바	8
1601	60131457	팀발레스	8
1602	60131699	드럼세트	8
1603	60141104	비디오게임기	6

[별표 2]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일반승용차	9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601	덤프트럭	8	
7	25101611	화물트럭	8	
8	25101703	구급차	5	
9	25101789	소방펌프차	7	
10	25101790	소방물탱크차	7	
11	25101791	소방화학차	7	
12	25101792	소방사다리차	7	
13	25101793	구조공작차	7	
14	25101794	배연차	7	
15	25101796	무인방수탑차	7	
16	25101801	모터사이클	7	
17	25101802	스쿠터	7	
18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0	
19	25101904	골프카트	9	
20	25101910	살수차	9	
21	25101923	무한궤도형트랙터	10	
22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8	
23	25101926	제설차	9	
24	25101963	노면청소차	8	
25	25101975	중계차	7	
26	25101976	진압차	9	
27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9	
28	25101980	다목적운반차	9	
29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30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7	
31	25101986	견인트럭	8	
32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8	
33	25101991	유개트럭	8	
34	25101992	유조트럭	9	
35	25101994	탱크트럭	9	